2013년 11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월 28일(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동반성장지원과장 이대건(042-481-8957), 주무관 고주현(042-481-4477)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신고접수 및 무료 법률자문 실시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11.29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3배 이내)

**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 (당초) 기술자료 요구·유용 → (확대)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되며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 우선,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중기제품 전용매장** 입점시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심결한 경우 0.5점, 법원 승소시 1.0점(최대 3년)
** HIT 500 PLAZA(부산역, 인천공항면세점 등 7곳), 고속도로 휴&쇼핑(칠곡, 경주 등 5곳)

○ 더불어, **민사소송비용 등 운전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4.17%('13.4분기 기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 공익침해행위(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진정 및 수사의 단서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단, 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가 인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은 금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 **전국 순회교육,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 제도 시행이후 중소기업의 애로 및 이용실적 등을 점검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고주현 주무관(☎ 042-481-44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요

□ 제도 개요

○ 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통상의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 고액의 손해배상을 통한 징벌과 더불어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도입

○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위자료 산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미법계에서 주로 운용

*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규모는 작지만 전체 피해가 막대하여 각각의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규모보다 침해자가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에 주로 적용

□ 제도 도입 경과

○ 「하도급법」 개정('11.3.29)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한적 도입

- 원사업자는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3배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법률로 규정

○ 불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중소기업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 대두

⇒ 이에,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13.11.29 시행)

< 적용범위 확대내용 >

종 전	확 대
▪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 (법 제12조의3)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법 제4조) ▪ 부당한 발주 취소 행위(법 제8조) ▪ 부당한 반품 행위(법 제10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법 제11조)

참고2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현황

□ 신고센터(14개소)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팩스	주소
서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43 F)02-2110-0664	(우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	02-2100-4900 F)02-2100-4941	(우110-30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2 F)02-780-2448	(우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444 F)02-368-8499	(우152-75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2층
인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2 F)032-818-0206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경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7 F)031-201-6959	(우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부산 울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3 F)051-335-4335	(우618-270)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경남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1 F)055-262-5560	(우641-06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광주 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6 F)062-366-9662	(우502-200)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1 F)063-210-6460	(우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63 F)053-654-1714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대전 충남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7 F)042-865-6139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북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23 F)043-235-2492	(우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강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00 F)033-260-1619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온라인 신고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민원참여 - 민원신고 - 불공정거래신고(국민신문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 사업안내 - 공정거래/공정경쟁문화 - 수·위탁분쟁조정 - 분쟁신청하기

□ 신고센터 업무처리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신고 · 접수	▪ **신고** – **우편·방문 :** 불공정거래 신고서 작성·제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민원상담-민원신고-불공정거래신고센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공정거래/공정경쟁문화-수·위탁분쟁조정-분쟁신청하기 ▪ **접수 :** 법률자문, 조정, 신고 등 상담 후 신고자료 보완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지방중기청, 옴부즈만지원단), 중기중앙회, 대·중기협력재단 등 14곳
검토 · 상담	▪ **단순 상담 :** 단순 신고 건은 각 센터에서 처리 ▪ **법률자문** : 비즈니스지원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활용 – **비즈니스지원단(온라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 로그인→‘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등록→법률자문 내용 등록(상담 무료) – **법무부 지원활용(온라인)** :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www.9988law.com) 로그인→사건접수(자문·상담 무료, 소송 30% 기업부담 200만원 이내 지원) – **대한변협 등** : 신고내용을 전달하여 전문 상담 등 진행(자문·상담 무료, 소송은 미지원)
사건처리 및 사후관리	▪ **사건처리** – 상담 및 법률자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피해기업이 공정위 제소 또는 소송제기 ▪ **사후관리** – 매월 신고·접수 기업에 대한 사건 처리현황 점검 및 본청 보고

참고3 피해기업 지원 방안

구 분		세 부 지 원 내 용	비 고
법률자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 민사소송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시행 즉시 지원
소송지원		공정위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시 신속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공정위)	‘14년부터 지원
판로 지원	공공 시장	공공조달 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최대 3년) (신인도 평가시 0.5~1.0점 감점)	
	민수 시장	(B2B)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B2C) 중기제품 전용매장 입점업체 평가시 가점	
자금지원		긴급한 자금 소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4.17%('13.4분기 기준)	
정부지원 사업 우대지원		수출역량 강화사업 기업평가시 가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기업평가시 가점	

※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 중소기업 기준

- 공정위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심결을 받은 기업
- 법원으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기업